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나779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소17421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샐러드바 전문점 D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또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여 피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으로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위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가맹본부인 피고는 같은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C가 원고에게 피고의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역시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C에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조정환, 판사 오승이